

●서울특별시 중구공고 제 2017-737호

다산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(안) 공람공고

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31번지 일대 「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(안)」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.

2017. 10. 25.

중 구 청 장

가. 공람기간 :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31일간

나. 공람장소 : 중구청 주택과(☎ 3396-5725)

다. 공람공고 : 구보 및 중구청 홈페이지(<http://www.junggu.seoul.kr> → 고시·공고)

라. 공람의견 제출장소: 중구 주택과(☎ 3396-5725)

마.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(안)

1. 정비구역 지정

구 분	구 역 명	위 치	면 적(㎡)			비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신설	다산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	중구 신당동 831번지 일대	-	증)126,747	126,747	

2. 정비계획(안) : 붙임참조

바. 관계도서 : 공람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

사. 본 정비계획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아.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구 주택과(☎ 3396-572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주거환경관리구역 결정도

붙임 2. 주거환경관리사업 종합계획(안)



※ 상기 계획(안)은 향후 행정절차 진행과정 및 실시계획단계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.